

『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5월 10일

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.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.

다. 감면대상자

-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
-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업종의 사업자
- 착한임대인
 -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제외
- 영업용 차량
 - 2021. 6. 1. 현재 구미시에 등록되어 있는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12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차량 소유자

라. 세목별 감면내용

- 주민세 사업소분
 -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
 - 「지방세법」 제75조제2항제2호의 중소기업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
 - 중대본·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
- 재산세(착한임대인)
 - 과세기준일(6.1)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
 -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
 - 임차인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 -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

가) 재산세 감면세율 산출

$$\text{해당 임대부분 재산세액} \times \text{임대율 인하율}$$

나)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미만 시 임대료 인하율 환산식

$$\frac{\text{임대료 인하 평균 월 임대료}}{\text{임대료 인하 전 월 임대료}} \times \text{임대료 인하 월 수} \div 3$$

다) 감면한도

(1) 임대율 인하율 : 최대 50%

(2) 감면금액 : 최대 100만원

○ 자동차세

- 과세기준일(6. 1.)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영업용차량의 자동차세 연세액
-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연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환급 처리

마. 감면방법 : 직권 또는 신청

바. 기타사항
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 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함.
- 허위로 감면받거나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함.
-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과 후 신청기간 내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처리 함.

사. 참고사항

○ 감면 추계액 : 붙임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제1호 나목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2호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-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- 「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-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(정의)

○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통보

(도 세정담당관-2668, 2021. 2. 17.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○ 본 동의안은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직·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를 한시적으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2021년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 감면액은 약 16억 5천 8백만원 정도로 예상되며,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